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하중환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1h6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1. 29.

발의의원 : 하중환 의원, 김은영 의원

1. 제안이유

2018년 10월 조례제정 당시 행정안전부(당시 행정자치부)의 준칙 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기금사용에 제한을 두는 일부 단서 조항 삭제 및 부분 개정하여 우리군 특성에 맞게 운용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 사용을 제한하는 제4조 일부 단서 조항 삭제 및 부분 개정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일부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.

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신축 및 증축 등 대규모 사업의 경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금의 사용) ①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. <u>다만,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%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</u> 1.~3. (생략) 4. <u>공공청사의 신축 및 증축 등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</u> 5. (생략)	제4조(기금의 사용) ①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. <삭제> 1.~3. (현행과 같음) 4. <u>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신축 및 증축 등 대규모 사업의 경비</u> 5. (현행과 같음)